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6조 [계단의 강도]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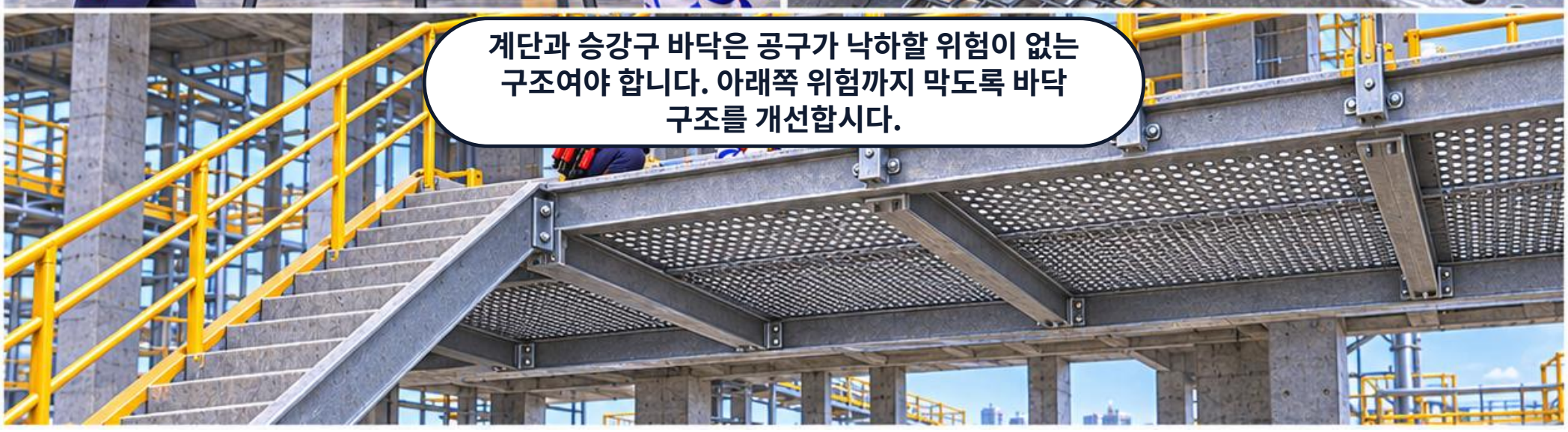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6조(계단의 강도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**500킬로그램 이상**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율[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(破壞應力度)와 허용응력도(許容應力度)의 비율을 말한다)]은 **4 이상**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조문 대조 2026. 10. 29.